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6456

제출연월일: 2024. 12. 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무사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1항 전단 중 "휴업"을 "30일 이상 휴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휴업신고) ① 법무사가 <u>휴</u>	제18조(휴업신고) ① <u>30일</u>
<u>업</u> 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	<u>이상 휴업</u>
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	
여야 한다. 이 경우 휴업기간은	
2년을 초과할 수 없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